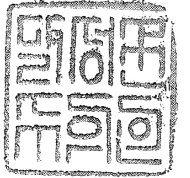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1992
----------	------

제출일자 : 2021. 10.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안 제5조)
- 나. 문화도시 조성 지원(안 제6조)
- 다. 문화도시 추진단 설치(안 제7조)
- 라. 문화도시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제15조)
- 마. 문화도시센터 설치(안 제16조 ~ 제 17조)
- 바. 문화도시 사업 위탁운영(안 제18조 ~ 제 1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550백만 원 반영되었음
-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2. ~ 9. 23.(21일간)

나. 예고결과 : 2021. 9.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1건)

－ 의견내용 : 문화도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 수정하기를 바랍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를 통한 도시전략을 구축하고, 문화도시에서 문화의 목표가 시민의 삶과 일상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며, 시민 참여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힘씀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문화·사회·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 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문화와 관련한 군 정책을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군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의 성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신청, 지원결정, 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참여를 하는 등의 자원 봉사활동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평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 지역 조례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10.04 조례 제1448호

(일부개정) 2020.06.26 조례 제1524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김해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48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66> ~ <68> <생략>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19.09.17 조례 제17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항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 활동의 참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포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

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6년
- 주요내용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비용
 - 지역문화진흥법 상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 공모 추진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예비문화도시 단계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운영비
- 문화도시 단계 : 각종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비

3. 관련조문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 나. 추계 결과 : 6년간 15,550,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공모사업 선정 시 국·시비 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최수정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의존재원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세 출		55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문화도시 조성		55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재원 조달		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의존 재원	소 계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지방세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비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기 타 (차입금 만차 예비비 등)								